



2007. 1. 26.

캐나다의 식품 수입관리제도

목차

1. 캐나다의 수입식품관리제도

내용문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출통상팀

(02-2194-7428, yutaka2@khidi.or.kr)

□. 캐나다의 수입식품관리제도

- 캐나다는 식품 검역이 엄격하기로 알려진 국가로서,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 Canada Food Inspection Agency)은 1차 농산물은 물론 일부 가공식품에 대해 선별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수입업자는 캐나다 식품검역청에서 발급하는 수입자 라이선스(Importer's License)를 취득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며, 동 라이선스 취득 이후에도 매년 캐나다 식품검역청에 라이선스 유지비를 납부해야함
-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식품류는 수입업자가 캐나다 식품검역청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입업자의 신고 이후 캐나다 식품검역청은 수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수입 허가 결정을 내리면 수입 식품에 일련번호를 부과하여 수입업자에게 통보함
- 이후 실제로 식품류가 캐나다에 도착하면 일부 제품에 대해 선별적인 검사를 실시하는데, 과실류, 어류, 육류의 경우 특별 검사를 위해 별도의 검사장으로 제품을 운반, 검역을 실시함.(운반비, 검역비, 보관비 등은 수입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검역에서 반입 불허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국으로 반송시키거나 현장에서 폐기시키도록 하며, 참고로 캐나다 식품검역청에 따르면 한국산 식품류 중에서 가장 많이 통관불허 판정을 받은 제품은 배, 어류, 젓갈 등으로서 유통기한 및 보관이 민감한 제품들이라고 함
- 이에 따라 향후 캐나다에 식품류를 수출할 경우에는 보관용기, 유통기한, 제조방법 등에 대한 투명한 근거를 식품검역청에 먼저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깨끗한 환경에서 제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ISO 인증을 취득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으로 사료됨
- 캐나다는 규정의 적용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사회로 법의 준수여부에 따른 처벌과 보상이 엄격하게 이루어짐
-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기본적으로 건강과 식품안전 규정 및 라벨링 규정이 포함된 Food and Drugs Act and Regulations의 적용을 받음
- 수입품목, 수출국, 캐나다 수입지역 등에 따라 각종 수입허가나 수출국의 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 캐나다의 수입식품검역업무 및 수입식품검사업무는 CFIA(Canadian Food

and Inspection Agency)로 일원화 되어 있는데, 수입업자는 수입식품의 통관을 위하여 먼저 캐나다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서류 절차를 거친 후, CFIA에서 검역 및 검사를 받고 캐나다 세관으로부터 관세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서 통관 수속을 밟아야 함

- 캐나다의 수입절차

• 통관수속

>검역신고서 및 검사신고서

>화물통제서류(Cargo Control Document)

>상업용 송장(Commercial Invoice) 2부

>B3 Form 관세책정용 2부 (\$1600 이상의 선적품은 통계청장용 1부 추가)

>식물검역증명서, 멸종위기 동식물관련 CITES 서류

• 통관수속양식을 세관에 제출

• 검역

>식물검역(Plant protection Act and Regulation)

: 질병 및 해충의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산 신선과일 및 채소에 대해서는 식물검역증명서 요구

<수입요구조건>

: 도착 후 감사(audit)적 검역을 실시

: 해충, 흙, 이물질 등이 없어야 함

: 선적서류에 원산지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품종별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와 수입국 수입허가서 필요

>육류 및 육가공품

: 육류 및 가금육의 수입관련 규정은 “Meat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s”와 “Export and Import Permits Act”의 내용을 따르며, 캐나다로의 육류 수출은 수출국의 육류검역 시스템이 캐나다의 기준과 동일함이 입증된 후 수출을 의도하는 육류 가공공장이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업무는 Canadian Food Inspection System에서 관장

>수산물

:수산물 수입업체는 수입하는 상품의 유형, 물량, 생산업체명, 원산지, 창고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CFIA에 통보해야 함

식품안전, 위생, 라벨표기 등에서 문제가 있는 수산제품의 캐나다 내 반입 금지를 위하여 Import Alert List에 해당하는 수입품과 표본 추출된 수입품들은 Canadian Food and Inspection Agency(CFIA)가 검역 실시 Fish Inspection Regulations에 의해 수입품이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반입거절(Refusal of Entry)이 통보되며 통보 후 45일 이내에 폐기 또는 반송되어야 함

- 세관 통과 및 고지서 발부 / 반송, 폐기처분 또는 재검역
 - >수입식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식품은 관세 납부 후 물품을 인수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반송, 폐기처분하거나 다시 서류 심사부터 재검역을 실시
- 캐나다 농업생산품법(Canada Agricultural Product Act)
 - >캐나다 농업생산품 법 및 관련 규칙은 농산품에 대한 국가 표준과 등급을 정하고 외국과의 식품무역, 캐나다 내의 다른 주와의 식품무역 시에 요구되는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소비자 포장 및 표시법 (Consumer Packaging and Labeling Act)
 - >소비자 포장 및 표시법은 소매로 판매하는 소비자 포장 상품의 일관성 있는 표시를 규정하고 있음
 - 관련 규칙은 2개 언어 표시, 수량신고, 필수표시정보의 표시크기와 표시위치 등에 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함
- 식품표시 및 광고지침 (Guide to Food Labeling and Advertising)
 - >캐나다 식품청은 포장된 식품을 캐나다에서 판매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제시한 식품 표시 및 광고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본 표시 요건
- 품 광고 요건
- 식품의식 성분, 품질, 수량, 원산지 표시 요건
- 영양 표시 요건
- 영양소 함량 표시 요건
- 건강 유효성 광고 표시 요건
- 기타 특별사항 표시 요건
-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포장식품은

표시를 요구함

- 날개로 판매하는 캔디 한 알이나 껌 한 개와 같이 한입에 넣는 당과류
- 포장지나 1/2 인치 (12.7mm) 미만 너비의 띠로 포장된 생과일이나 야채
- 판매할 때 포장되는 점원이 서빙하는 식품은 포장식품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표시가 필요 없음

- 수출입 허가법 (Export and Import Permits Acts)

- 이 법으로부터 제품과 기술에 대한 수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
- 수출입 허가법은 수입통제품목, 수출통제품목, 수출입통제대상국으로 알려진 일련의 항목 설정을 규정한다.
- 수출입 허가법이 각 품목마다 어떤 상품이나 국가가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선정 기준을 지정하며 캐나다 정부는 수입과 수출 허가증을 발급함으로써 이 품목에 거론된 상품의 유입, 특정 국가로의 수출 및 수입을 통제
- 수출입 허가법은 캐나다 외무부가 자국의 기업들에게 할당량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며, 할당량이 지정된 후에는 명시된 조건에 따르는 한 할당된 양만큼을 수입할 수 있는 허가증이 발급됨